

청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6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5090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626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법무법인 C

소송대리인 D, E

변론종결 2022. 12. 22.

판결선고 2023.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대위변제금 회수 관련 사건(이하 ‘민사사건’이라 한다)과 G의 가등기 설정 및 임의경매 취하 관련 사기 등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위임하면서 각 사건당 5,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고, 사건당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경영자문을 맡은 H의 소개로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민사사건의 소장 작성과 형사사건의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7.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대방인 F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15억 원 중 일부인 2억 1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21. 5. 11.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대리인 B는 2021. 5. 7. 피고 소속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위임관계를 종료하고 지급된 보수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변호사는 보수의 반환에 관해서는 H에게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5. 18. ‘G가 원고를 기망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실제 보유 채권액(47,847,956원)을 초과하는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는 내용의 형사사건 고소장을 작성을 마치고 이를 민사사건 판결문과 함께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5. 31. ‘H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달할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H를 고소하였는데, H는 2021. 6. 16. 수사기관으로부터 변호사 보수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의 대리인 B는 2021. 6. 7. ‘민사사건은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종결되었고, 형사사건의 경우 위임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위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변호사 보수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중 990만 원 뺀 나머지 9,010만 원은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21. 7.경 ‘이미 진행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관한 1억 원은 반환해 줄 수 없고, 이 사건 위임계약 무렵 별도로 위임받은 다른 2건에 관한 보수 1억 원은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수임료 반환 문제를 H와 협의하라고 하였다.

자. 이후 원고와 H,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위 다른 2건의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수 1억 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따로 제기하였다). 위 다른 2건에 관한 사건에서는 2022. 11.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I,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1, 12, 15호증, 을 제1, 2, 3, 7, 8, 9,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위임사무의 처리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수 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임사무가 종료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였므로, 피고는 그중 9,01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위임에 따른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부당한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고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1억 원)은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적정 보수액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원고는 승소를 위해서 피고를 선임할 필요가 있고 다액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H의 말에 따라 피고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각 보수를 5,000만 원씩으로 정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전에 사건의 쟁점과 난이도, 투입될 시간과 노력 등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위임의 경위, 사건의 난이도(소장과 고소장, 질의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변호사 보수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인 피고와 의뢰인인 원고 사이에 존재하는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이 보수액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소속 변호사의 면담(총 2회)과 이메일을 통한 질의회신과 자료수집을 거쳐 민사사건의 소장과 형사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면담의 횟수, 질의회신의 횟수, 검토한 자료의 분량과 내용, 작성된 소장과 고소장의 분량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장과 고소장의 작성까지 과중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소장 작성 후로 추가적인 변론활동은 필요하지 않았다. 민사사건의 소가(청구원금)은 2억 100만 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소 제기 당시 향후 청구취지를 15억 원까지 확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실익이 없음을 고려하여 확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송위임을 통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고소 이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변론활동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장을 작성한 단계에서 원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사무가 종료되었고, 피고는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고소를 통해 원고가 G에게 임의경매 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6,000만 원의 회수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고소 사건의 위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은, G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47,847,956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2,152,044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수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고소장에 위 47,847,956원에 관한 사기의 점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⑥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피고가 수행한 위임사무의 내용과 경과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보수액을 포괄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받을 적정한 보수액은 두 사건의 보수를 합한 금액에 적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적정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의 위임관계 중단에 따른 반환 범위도 함께 고려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받을 적정 보수액은 약정액의 40%인 4,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2020. 4. 28.(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이다)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보수가 지급된 후로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보수의 반환채권은 위임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관계의 종료 및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은 2021. 6.경 피고에게 발송되었고, 피고가 2021. 7.경 원고에게 별개 사건들의 보수를 반환하는 제안을 하였는바, 원고의 보수 반환 청구가 2021. 6. 말경에는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21. 5. 3.경 피고에게 위임관계의 종료를 통보하고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민사사건의 판결선고일(2021. 5. 11.)까지 원고를 해임하지 아니하였고, 2021. 5. 18. 형사사건 고소장을 받고 이를 검토하였다고도 밝혔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확정적인 해지 통보와 반환 청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6. 말일의 다음날인 2021. 7. 1.부터의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